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50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7. 8.
3. 회 부 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직원에게 치료 및

<신 설>	<u>치료를 위한 요양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④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건강검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¹⁾

1)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직원에게 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정안에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교직원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 등에 대한 질병휴직의 필요성, 휴직 종료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원 등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와 질병휴직위원회(「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될 것으로 보임.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현황]

구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	질병휴직위원회(자문)
근거	· 각 교육청별 규칙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교육부 예규)
운영	· 서울 등 14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 전체 17개 교육청
대상	· 전체 교원 중 해당 교원	· 교육공무원 중 해당 교육공무원
심의·자문 사항	·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아래 조항의 조치(휴직, 직권 면직) 필요성 · 아래 조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호의3(불임·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경북교육청은 교원 직무수행심의위원회로 운영
2. 서울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것으로 규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각 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 및 제2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및 제2조 내용 정리

□ 또한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인 치료, 요양, 휴직과 관련하여, 요양은 장기간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고,²⁾ 휴직은 임용의 한 종류에 해당되며 관련 내용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함.³⁾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제13조는 교직원의 건강검사 또는 이를 갈음하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직권 휴직 등 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행법령 등에 근거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⁴⁾ 이를 개선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는데, 각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위원회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 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4)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환회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

[위원회 관련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091호)	고동진 의원	2025.2.12./ 2025.2.13.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2	교육공무원법 (제2208113호)	박덕흠 의원	2025.2.12./ 2025.2.13.	· 정신질환자를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 (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138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4	교육공무원법 (제2208153호)	김기현 의원	2025.2.14./ 2025.2.17.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질환교원심의 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45조의2 신설)
5	교육공무원법 (제2208160호)	고민정 의원	2025.2.14./ 2025.2.17.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휴직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6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안 제44조의2)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7	교육공무원법 (제2208232호)	윤준병 의원	2025.2.18./ 2025.2.19.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 능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 지원을 위한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 설치 (안 제44조의3 신설 등)
8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분리 조치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9	교육공무원법 (제2208645호)	윤상현 의원	2025.3.4./ 2025.3.5.	·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업무배제, 분리조치, 휴직 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 신설) ·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 제45조의2 신설)
10	사립학교법 (제2208137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6조의2 신설)
11	사립학교법 (제2208807호)	김문수 의원	2025.3.11./ 2025.3.12.	·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분리 조치근거 마련 (안 제58조의3 신설) ·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9조의2 신설)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 권고 또는 직권휴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직권 질병휴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같은 법에 질병휴직 및 복직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법제화를 추진 중임.

※ ‘대전 초등학교생 사망 사건(25.2.10.)’ 이후 「교육공무원법」 11건 등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 다수

- 다만, 교원의 휴직은 임용(휴직은 광의의 임용에 포함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법에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공기의 질 유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구성원의 건강검사,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무원인 행정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라 질병휴직 결정 시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 및 직권 질병휴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 등의 경우, 신체·정신상 이상이 있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각 시·도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판례는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직권휴직의 근거 역시 마련되어 있음.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09.9.10. 2007두10440)

○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의 질병휴직 심의 등과 관련하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근로자)에게 각각 적용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현재 교원 대상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은 행정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검토 - 민감한 개인의 질병정보가 보고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에서 개인은 치료를 회피하고 은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정신적 질병에 대한 정보가 조직 내부에 공유될 경우 낙인효과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또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기존 법령 및 제도와 기능 중복 및 충돌 우려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교직원의 인사·복무 관련 규정이 「학교보건법」에 수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률 간 기능·체계적 분리 원칙에 어긋남. - 또한, 현재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학교보건법」에 동일한 취지의 조항을 중복 신설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직원과 다르고,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하므로 개정안의 위원회 대상은 교원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충청남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교직원질병휴직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우며, 위원회 구성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건강 보호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교원의 질병 심의 및 인사권과는 법리적 성격이 전혀 달라 「초·중등교육법」에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의 경우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같은 성격의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중검토 -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의 모든 질병 치료 유무를 의결한다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정서,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자체 규칙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할 경우 문제교사 골라내기에만 머물며 학교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간과하기 쉬워질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